

## 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】

영 주 시

##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71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 . .  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「제2단계 읍·면·동 기능전환 추진지침」에 의한 읍·면·동의 존치·이관사무의 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융자대부금 신청시 소득자금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토록 하고, 안정자금은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함.

#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~'~

##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거주지의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”를 “소득자금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안정자금은 거주지의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~2~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【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용자금의 대부신청) ①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실질적인 부양의무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<u>거주지의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6조(용자금의 대부신청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득자금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안정자금은 거주지의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u> ②(현행과 같음)</p>